

■ 중국문화산업 이슈

▶ 음악산업

1. 중국 음악산업 현황 및 특징

중국에서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음반산업의 중국진출이 갈수록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음반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음반산업 메커니즘 특수성이나 그들의 오랜 역사에서 형성된 문화적 자존심과 그들의 취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음악시장도 인터넷쪽으로 커지고 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인터넷사용자와 인터넷연결컴퓨터수량이 세계 2위이다. 2005년 중국인터넷음악시장규모가 27.8억위안(약 3,330억원)으로 전년도대비 61% 성장하였고, 2006년에는 50% 이상 성장하는 등 중국의 인터넷음악산업이 고속성장하고 있다.

음반유통판매(도소매에 한함) 사업은 소수지분보유를 전제로 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음반제작, 수입사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온라인상에서 전송되는 음악은 문화부의 내용 심사를 거쳐 비준을 취득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온라인음악수입업무는 문화부로부터 비준을 취득한 영리성 인터넷문화경영업체가 취급하여야 한다.

II. 관련 법률 및 정책

반포기관	관련 법률	시행일
국무원	관리단체 관리 조례	2002년 2월 1일
문화부, 세관총서	관리단체수입관리방법	2002년 6월 1일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	인터넷출판관리집행 규정	2002년 8월 1일
문화부	인터넷문화관리집행 규정	2003년 7월 1일
문화부, 상무부	중외합작관리단체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2004년 1월 1일
신문출판총서	관리단체출판관리규정	2004년 8월 1일

광전 총국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 시청 프로그램 전송 관리방법	2004년 10월 11일
-------	------------------------------	---------------

중국의 음반산업은 《관리 단체관리 조례》, 《관리 단체 출판관리 규정》, 《관리 단체 수입 관리 조례》, 《중외 합작 영상제품 유통판매 기업 관리 방법》에 근거한다.

음반제품 내용수록 금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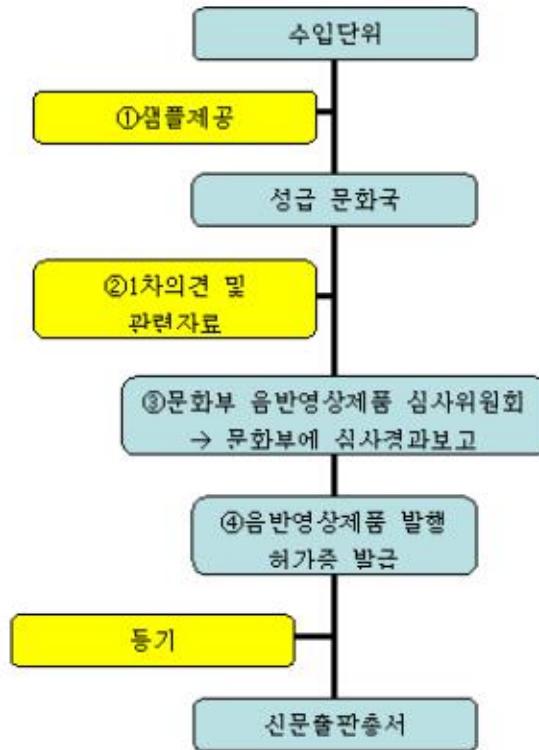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해하는 내용

-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의 명예 및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 민족증오, 민족차별 선동,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미풍양속,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 사교,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사회의 질서,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 미화하거나 범죄를 사주하는 내용
- 타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으로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사회의 공종도덕과 민족의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내용
-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 등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III. 음반제품 수출절차 및 구비서류

1. 결차



- ① 중국측 파트너는 설립하려는 합작기업을 소재지의 문화국에 신청한 후 동의를 받고 문화부에 프로젝트 신청비준 / 문화부 30일 내 비준결과 서면통보
- ② 상무국의 동의를 거쳐 상무부에 심사비준신청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 ③ 문화부에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신청하여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 취득



음반영상제품 경영허가증

2. 구비서류

문화부 프로젝트 비준신청 구비서류

- 프로젝트 신청서
신청서기재 사항: 설립 회사상호, 주소, 경영범위, 투자자금의 출처와 액수
- 합작당사자가 공동으로 편성하거나 인정한 항 목건의서 혹은 가능성연구보고서
- 합작당사자의 영업집조 혹은 등기서류, 자산신용증명서 및 법정대표인의 유효증명
- 중국측 파트너가 투자하는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관리기관의 평가보고승인서(중국측 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합작 조건으로 할 경우)
- 문화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상무국 설립신청 구비서류

- 설립신청서
- 합작당사자가 공동편성하거나 인정한 프로젝트건의서 혹은 가능성연구보고서
- 문화부의 프로젝트 비준서류
- 합작계약서, 정관
- 중국측 파트너가 투자하는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관리기관의 평가보고승인서(중국측 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합작 조건으로 할 경우)
- 합작당사자의 영업집조 혹은 등기서류, 자산신용증명서 및 법정대표인의 유효증명서류
- 기업명칭 예비심사비준통지서
- 동사장, 부동사장,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 명단
- 상무부가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 구비서류